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24.7.4.)
- ②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24.7.17.)
- ③ 국민권익위-UNDP, 우즈베크에 반부패 정책 '맞춤형 개선책' 제안 (24.7.11.)
- ④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내가 손잡고 앞장서"(24.7.9.)
- 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올해 2분기 보상금 10억9천만원 지급(24.7.1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 국민권익위,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 지방의회 셀프 포상 및 자문료 몰아주기 근절 등 1,411건 개선 권고

(‘24. 7. 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 * 부패영향평가 :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소관 기관의 장에게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또한,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포상 대상에 포함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포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취소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 일부 지방의회에서 교수나 변호사 등을 의정활동 등 자문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장기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 고문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패 발생을 차단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진입장벽을 해소하였다.

이 밖에도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의정동우회 등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 기준 마련, 출장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환수 의무화 등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 (평가 대상) 86개 지방의회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조례·규칙·예규 등)

<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현황 >

계	조례	규칙	훈령	예규
3,649개	1,892개	1,313개	322개	122개

- (평가 결과) 11개 개선과제에서 1,411건 개선권고

< 86개 기초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

-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의원들 스스로 심의하지 않도록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명시 및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연구단체활동 결과물(연구결과보고서, 용역보고서, 예산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청렴의무 등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정한 의원 의무사항 위반이 징계대상 위반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행위별 징계양정기준 마련
- 윤리심사자문위에 공무원 등 참여 예외적 허용 금지
-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
-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마련, 위원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출장심사위 구성 시 외부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이 7인 이상 참여하도록 개선
- 심의위원인 의원이 출장 당사자인 경우 심의 배제
- 심사위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의 과반수에서 2/3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

규정 마련

- 심사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출장목적·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부당사용 경비 환수

○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징수 근거를 조례에 반영
-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여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여비 지급 기준을 조례에 반영
- 교통비는 정액이 아닌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청탁금지법,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등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접대비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제한기준 정비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기준 마련
- 의원대상 교육 및 주기적 사용내역 점검 의무화

○ 지방의회 포상 적격성·공정성 제고

-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부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위반·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 마련
- 성범죄·음주운전 등 부적격자는 포상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포상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 참여하도록 규정 보완
-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 개선

○ 의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의정동우회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조례 정비

○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

○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 출장비 부정 수령 가산 징수 범위 확대(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 및 운임·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개선

○ **지방의회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 특전문구(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를 삭제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과태료 적정성 제고**

-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지방공공기관 중대비위 징계 사각지대' 해소된다

-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보다 느슨한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체계
- '성비위 징계시효 연장(3→10년), 성비위·음주운전 수사 통보' ...
법 개정해야.

(‘24. 7. 17. 국민권익위)

최근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이 성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시효가 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성비위 징계 시효가 3년인 지방공공기관이 약 85%(전체 291개 중 248개)였고, 지나치게 짧은 징계 시효로 인해 소속기관에서 성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 시효 도과로 인해 징계처분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 시효기간이 10년인 기관은 36개(약 12.4%), 5년인 기관이 3개(약 1%), 2년인 기관이 2개(약 0.7%), 징계 시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도 2개(약 0.7%)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개시할 때 그 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조사가 개시된 모든 사건이 통보되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도 소속기관이 제때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6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9명이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나, 소속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징계 시효를 도과하여 주의·경고 처분에 그쳤던 것을 확인했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자진신고 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제도’ 등 자체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급기관의 기준·지침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운영하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공무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 등이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수사·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대상에 성비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거나 지방공공기관이 자체감사를 할 때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등 음주운전 자체 점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청렴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지방공공기관의 종류**

-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
-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으로 약칭)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 ※ 2024.3.31. 기준 지정·고시 기관 총 843개(출자기관 95개, 출자·출연기관 748개)

□ **지방공공기관의 징계 제도**

-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등 법령은 인사운영의 원칙 등을 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지침*에 위임
 -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 지방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인사 관리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규정 체계>

구분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지침	지방공무원 관계 법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규정		자체 규정(각 기관)		자체 규정(각 기관)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의 징계 관련 주요 내용>

- (원칙)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해야 함
- (징계 감경 금지)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 (승진 제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제한하고, 채용 비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승진 제한
 ※ 제한 기간: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의원면직 제한) ① 비위 관련 조사·수사 중, ② 외부 감사 결과 중징계(당연퇴직, 파면·해임) 처분 요구가 있거나 ③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 (표창 제한*)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②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방공기업만 해당,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는 관련 사항 없음
 ※ 제한 기간: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은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및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운영 현황

-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현황) 104개 지방공기업 중 89개 기관(약 85.6%), 187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중 159개 기관(약 85.0%)이 3년으로 규정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 시효 규정>

분류	징계 시효					
	합계	2년	3년	5년	10년	규정 없음
지방공기업	104	1	89	1	13	0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1	159	2	23	2
계	291	2	248	3	36	2

-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 운영 현황) 일부 지방공공기관에서 수사 통보 흡결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진신고제도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확인제도와 같은 자체점검제도 운영

※ 감사원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관련 지침에 도입하도록 권고 ('공공기관 임용 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감사보고서, '24.1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4.5월)>

기관 구분	계	2가지 이상 운영	일부 운영			미운영
			소계	자진신고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지방공기업	104	16	18	4	14	70
지방출자·출연기관	187	7	25	3	22	155
합계	291	23	43	7	36	225

국민권익위-UNDP, 우즈베크에 반부패 정책 ‘맞춤형 개선책’ 제안

- 권익위, 우즈베키스탄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화상 연수 실시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올해 현재 13개국 공유 완료

(‘24. 7.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후원하여 저소득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기구

** (ACA) Anti-Corruption Agency : 부패사건 조사, 공직자 재산신고 등 담당하는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기관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 및 정책을 처리한 정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정의하여 측정하는 제도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하였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되었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

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 13개국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몰도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몬테네그로, 부탄, 몽골, 스리랑카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수를 계기로 산업·경제 부문 뿐 아니라 반부패 분야에서도 양국의 호혜적 협력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우즈베키스탄의 청렴도 평가 제도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다.

“건설현장 부패행위 해결, 국민권익위와 내가 손잡고 앞장서”

- 국민권익위-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늘(9일) 업무협약
체결...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24. 7. 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들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체 규정 정비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권익위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추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올해 2분기 보상금 10억9천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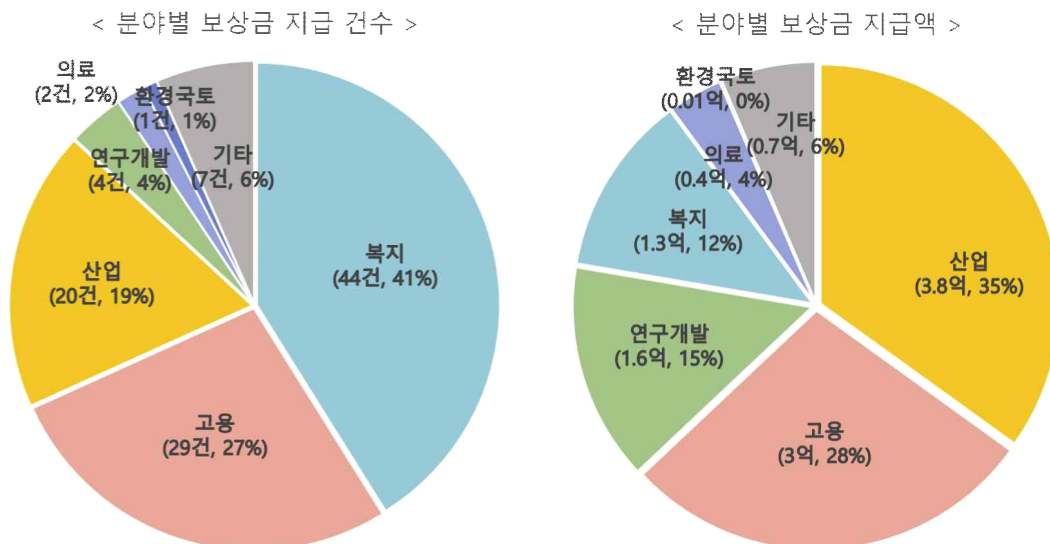
-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119억원에 달해... 신고 분야 중 산업, 고용, 연구개발, 복지 순으로 보상금 지급액 높아

('24. 7. 1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분기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했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119억원에 달한다.

올해 2분기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107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44건, 41%) ▲고용(29건, 27%) ▲산업(20건, 19%) 순이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3억8천여만 원, 35%) ▲고용(3억여만 원, 28%) ▲연구개발(1억6천여만 원, 15%) ▲복지(1억3천여만 원, 12%) 순이었다.



산업분야의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금 부정수급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다른 특정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해외 업체를 신고했고 약 8천 8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신고자 ㄴ씨는 다른 기업에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주는 조건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으며 보상금 7천9백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분야에서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ㄷ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약 1억5백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ㄹ씨와 ㅁ씨는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공동신고했으며, 약 1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횡령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ㅂ씨는 기술혁신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은 후 다른 업체와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연구과제를 중복 신청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와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7천2백만 원을 수여하였다.

신고자 ㄱ씨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사업 주관업체에 참여해 과제비를 편취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했으며 약 8천4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복지·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ㄴ씨는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고, 자산을 친척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편취한 ㄱ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약 2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ㄷ씨는 근무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경력을 과장하여 아동복지시설장에 임명된 후 인건비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아동복지시설장을 신고했고, 보상금 약 1천1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최초 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이어서 보상금이 일부만 지급*된 건들에 대해 별도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도 반기별로 각급 기관에 신고로 인한 수입 회복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거나 결정된 보상금의 50% 미만인 경우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

이번 2분기에도 보상금의 일부만 지급했던 사건의 수입 회복 증가를 일일이 확인하여 신고자 29명에게 총 1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신고자들의 용기 덕분”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상금, 포상금 등 신고자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